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4. 3. 17

시민보사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1월 18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4년 3월 17일

다. 상정일자 : 1994년 3월 17일

제23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사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市民局長 文忠實)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사무분장규칙의 개정에 따른 직제개편(가스계 폐지)에 의거 일부조항 개정

나. 주요골자

- 기금관리 공무원중 기금출납공무원의 변경(안 제 5 조)
(현행 : 기금출납공무원 가스계장 → 개정안 : 기금출납공무원 연료계장)
- 조문변경 “없음”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전문위원 : 姜性熙)

1994. 1.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동규칙 제18조이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해오던 산업과의 상공계, 물가계, 연료계, 가스계 및 농수산계 등 5개계가 상공계 유통지도계 및 연료계 등 3개계로 축소조정되어 가스계가 폐지됨으로써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조례 제 5 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공무원을 가스계장에서 연료계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을 요함.

4. 審査結果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1
----------	-----

제출년월일 : 1994년 1월 18일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改訂이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분장규칙의 개정에 따른 직제개편(가스계 폐지)에 의거 일부조항 개정

2. 主要골자

- 기금 관리 공무원중 기금출납공무원의 변경(안 제 5 조)

